

비정규직 차별에 대해 징벌적 배상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는 '다른 일반근로자들에 비하여 파견근로자들에 대하여 상여금을 적게 지급하고,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연대하여 그 손해액의 2배를 배상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 9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징벌적 금전배상 명령제도가 도입·시행된 이후 동 제도가 적용된 최초의 사례입니다(중앙 2015차별3~15 병합사건).

1. 징벌적 금전배상 명령 제도

징벌적 금전배상 명령 제도 도입 이전에는 사용자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에 비해 차별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에 원상회복 수준의 금전보상을 명하는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은 사용자의 고의적 또는 반복적 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징벌적인 성격의 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기간제법 제13조 제2항). 이는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차별행위를 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을 명함으로써 차별을 근본적으로 예방·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판정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① 이 사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이 있음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행위를 장기간 지속한 점, ② 이 사건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들은 차별적 처우가 포함된 근로자파견계약을 반복적·연속적으로 체결해 온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해진 차별적 처우는 반복적이고 고의성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면서, 손해액의 2배를 배상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2.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의 연대책임 인정

또한 차별시정의 책임을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의 연대책임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동안 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파견법 제34조 제1항을 근거로, 임금 등에 있어서 차별시정 의무자를 파견사업주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정에서는 ① 파견법 제21조 규정상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모두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의무를 부담하고, 파견근로자도 노동위원회에 사용사업주 또는 파견사업주를 대상으로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점, ②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사용사업주는 인건비 등이 절감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파견사업주에게만 책임을 부과할 경우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지는 점, ③ 파견법 제34조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있어 사용자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의무자를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파견사업주들과 사용사업주가 차별적 처우 시정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3. 기업의 대응방안

노동위원회가 징벌적 금전배상을 명하고, 지금까지 임금 등의 차별에 대하여 파견사업주에게만 책임을 물어오던 관행을 뒤집고 사용사업주에게도 연대책임을 부담시키는 해석을 함으로써,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인력운용에 따른 법적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특히 징벌적 금전배상은 앞으로도 빈번히 발하여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기업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을 미리 점검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를 자체적으로 시정하는 등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영석 파트너변호사	TEL. 02 316 4021	E-Mail. ysg@shinkim.com
● 김동욱 파트너변호사	TEL. 02 316 1646	E-Mail. dwokim@shinkim.com
● 김종수 변호사	TEL. 02 316 1678	E-Mail. jsokim@shinkim.com

Chambers Asia-Pacific Awards 2014
South Korea Law Firm of the Year : Shin & Kim

